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 반복 법위반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4. 20.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3. 31.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21312호)」(이하 ‘법률’)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하였다.

②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

개정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①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②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③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다.

더불어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게 하였다.

③ 사용후기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 [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3]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 ②게시기간, ③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하였다.

④ 과징금 가중·감경을 조정 [시행령 개정안 별표2, 과징금 고시 개정]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 범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 하였다.

⑤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들을 규정하였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 신고증을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붙임> 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3월 30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팩스: 044-200-4466

* 전자우편: bengsam2@korea.kr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 2. (생략)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 ·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

----- 신원정보”란-----

1. · 2.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신 설>

제25조의3(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3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는 제외한다.

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신 설>

제25조의4(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
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
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
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
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
개자는 지체없이 법 제20조
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
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5제6항에서

<신 설>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출액

2. 소비자 규모

3. 법 제20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일반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업무

4. 그 밖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

1. 작성 권한이 있는 자

2. 게시기간

<신 설>

제34조의2(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3.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4.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 제기 절차

제34조의2(동의를결의 이행관리 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의 동의를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
제32조의4-----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

②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3. (생략)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5. (생략)

②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시 중지를

경우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32조의4-----

-----.

1.~3.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4-----

-----.

1.~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2조의4-----

----- 일시중지-----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4.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에 대한이의제기)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1. (생략)

2. 개별기준

—.

1.2. (생략)

3. 임시중지—

4. 임시중지—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이의제기) 법 제32조의4—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처분 내용		
			1차	2차	3차
가. ~ 처. (생략)	가. ~ 처.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커. 법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신 설>	터.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	법 제32조 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우				
<신 설>	퍼.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 제32조 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신 설>	허.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신 설>	고. 제2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커.~터. (생략)	노.~도.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로. 제21조의4제1항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피.~초. (생략)	모.~누.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코.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두. 법 제34조의4제2항 ----- ----- ----- ----- ----- ----- --	(현 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나.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나. (현행과 같음)

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별표 3]

1.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가.~사.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100분의 100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사. (현행과 같음)	(생략)	2배 상향	2배 상향	2배 상향
아.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6호의2	400	1,000	2,000
자.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3	200	400	1,000
차.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4	200	400	1,000
카. 제20조제3항을 위	법 제45조제	200	400	1,000

	<u>반하여 불만이나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u>	4항제5호의5			
아. (생략)	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0	400	1,000
<신설>	파.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2	200	400	1,000
<신설>	하.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3	200	400	1,000
<신설>	거.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4	200	400	1,000
<신설>	너.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2	400	1,000	2,000
<신설>	더.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3	400	1,000	2,000
<신설>	러.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4	400	1,000	2,000
<신설>	머.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5	400	1,000	2,000
자.~차. (생략)	버.~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배 상향	2배 상향	2배 상향
<신설>	어.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8호	200	400	1,000

카.~하. (생략)	저.~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배 상향	2배 상향	2배 상향
거. 법 제32조의2 제1항을 위반 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피. 법 제32조의4 제1항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너. 법 제32조의2 제2항을 위반 하여---	허. 법 제32조의4 제2항 -----	(현행과 같음)	2배 상향	2배 상향	2배 상향
더.~버. (생략)	고.~로.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2.의 터부터 고까지의 개정 규정,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의 너부터 머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서류	(현행과 같음)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	2. (현행과 같음)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다. (현행과 같음)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u>3년</u> 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u>2회</u>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u>3점</u> 이상인 경우에는 <u>3회</u>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1) ----- <u>5년</u> 간----- ----- ----- ----- ----- <u>1회</u> ----- ----- ----- ----- <u>2점</u> ----- ----- <u>2회</u> ----- -----.
(가) 과거 <u>3년간 2회</u>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u>3점</u> 이상인 경우: <u>100분의 20</u> 이내	(가) -- <u>5년간 1회</u> ----- ----- ----- ----- <u>2점</u> ----- <u>100분의 40</u> 초과 <u>100분의 50</u> 이내
(나) 과거 <u>3년간 3회</u>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u>5점</u> 이상인 경우: <u>1</u>	(나) -- <u>5년간 2회</u> ----- ----- ----- ----- <u>3점</u> ----- <u>100</u>

<u>00분의 40 이내</u> (다) 과거 <u>3년간 4회 이상</u> 범위반 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 산점수가 <u>7점 이상인 경우: 1</u> <u>00분의 50 이내</u> <신 설> 3.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 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원상회 복 조치를 하는 경우: <u>100분의</u> <u>20 이상 100분의 30 이내</u> (나) <u>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u> <u>해를 50% 이상을 보상하고,</u> <u>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u> <u>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u> <u>이내</u>	<u>분의 50 초과 100분의 70 이</u> <u>내</u> (다) -- <u>5년간 3회</u> ----- ----- ----- ----- <u>5점</u> ----- <u>100</u> <u>분의 70 초과 100분의 90 이</u> <u>내</u> (라) 과거 <u>5년간 4회 이상</u> 범위반 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 산점수가 <u>7점 이상인 경우: 10</u> <u>0분의 90 초과 100분의 100</u> <u>이내</u> 3.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 <u>상당 부분 보상하거나,</u> <u>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u> <u>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u> <u>우: 100분의 10 이내</u> (나) 위 (가)의 행위가 조사가 개 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는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	---

<u>(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u>	<u><삭 제></u>
<u>(2)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u> <u>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사유가 위 IV. 3. 다. (1)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에 의한 감경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감경비율이 높은 감경사유를 적용한다.</u>	(2) <삭 제>
<u>(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u>	<u><삭 제></u>
<u>(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u>	<u><삭 제></u>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